

동두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6-11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9. .
제출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두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사무의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

- 지방재정법 제10조 → 지방재정법 제13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→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
- 영 제21조제1항 → 영 제26조제1항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동두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”를 “동두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10조”와 “제21조”를 각각 “제13조”와 “제26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영 제21조제1항”을 “영 제2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제2조 내지 제4조”를 “제2조부터 제4조까지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회 계 과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·성명	회 계 과 장 정 신 애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경 리 팀 장 김 희 자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주무관 이근혜 860-217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----- <u>제10조</u> ----- --- <u>제21조</u> ----- ----- ----- .	제1조(목적)----- <u>제13조</u> ----- --- <u>제26조</u> ----- ----- ----- .
제2조(채무보증신청의 제출)-- <u>제21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.	제2조(채무보증신청의 제출)-- <u>제26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.
제5조(보증채무의 변경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조 내지 제4조</u> ----- .	제5조(보증채무의 변경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조부터 제4조까지</u> ----- .

<별지 제2호서식>

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

제 호

동두천시장인

귀하

다음 채무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
1. 주채무자
2. 채무건명
3. 채 무 액
4. 이 자 율 년
5. 상환기간 자 지 년간
6. 상환재원
7. 담 보
8. 융자재원
9. 관계기관
10. 채무보증 근거
11. 기 타
12. 준수사항

가.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나.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
다.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,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·재산·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라.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

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지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마.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.

바.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.

<별지 제4호서식>

채 무 보 증 서

제 호

채 권 자 귀하

동두천시장 인

다음 채무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.

1. 주채무자
2. 채무건명
3. 채 무 액
4. 이 자 율 년
5. 상환기간 자 지 년간

(시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)

6. 상환재원
7. 담 보
8. 융자재원
9. 관계기관
10. 채무보증 근거
11. 기 타
12. 준수사항

가.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나.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
다.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·재산·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라.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.